

--- 목 차 ---

의안 번호	건 명	페이지
2017-105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1
2017-106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5
2017-107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25
2017-108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7-109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38
2017-110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4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의안 번호	2017-105
----------	----------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17년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보다 증액 확정됨에 따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조성 변경 계획

(단위:천원)

구분	2016년도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조성 변경계획			2017년도말 변경 조성액 [㉡] $e=d+a$	비고
		수입 [㉢]	지출 [㉣]	증감 [㉤] $d=b-c$		
당초	55,632	15,287	3,000	12,287	67,919	
변경	55,632	17,287	5,000	12,287	67,919	
증감	-	2,000	2,000	-	-	

나. 수입 및 지출 계획

(단위:천원)

구분	수입					지출				비고
	계	예치금 회수	과징금	도비 보조금	이자	계	사무 관리비	기본 경비	예치금	
당초	70,919	55,632	12,210	3,000	77	70,919	3,000	-	67,919	
변경	72,919	55,632	12,210	5,000	77	72,919	5,000	-	67,919	
증감	2,000	-	-	2,000	-	2,000	2,000	-	-	

붙임: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1 자금 조성 변경 계획

(단위:천 원)

구분	2016년도 말 조성액 ①	2017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2017년도 말 변경 조성액 ⑤=④+①	비고
		수입 ②	지출 ③	증감 ④=②-③		
당 초	55,632	15,287	3,000	12,287	67,919	
변 경	55,632	17,287	5,000	12,287	67,919	
증 감	0	2,000	2,000	0	0	

2 자금 운용 변경 계획

구분	사업명	도비 사업비(천원)
당 초	음식문화개선사업(소형복합찬가지원)	3,000
변 경	음식문화개선사업(소형복합찬가지원)	5,000
증 감		2,000

① 자금수지총괄

(단위:천 원)

수입 변경계획				지출 변경계획			
항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항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합 계	70,919	72,919	2,000	합 계	70,919	72,919	2,000
보 조 금	3,000	5,000	2,000	비용자성 사업비	3,000	5,000	2,000
예 치 금 회 수	55,632	55,632	0	예 치 금	67,919	67,919	0
이자수입	77	77	0				
기타수입	12,210	12,210	0				

② 수입 변경계획(안)

(단위:천 원)

장·관·항·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산출내역
수 입 합 계	70,919	72,919	2,000	
200 세외수입	12,287	12,287	-	
210 경상적 세외수입	77	77	-	
216 이자수입	77	77	-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7	77	-	
220 임시적 세외수입	12,210	12,210	-	
223 기타수입	12,210	12,210	-	
223-01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210	12,210	-	○과징금
500 보조금	3,000	5,000	2,000	
520 시·도비 보조금 등	3,000	5,000	2,000	
521 시·도비 보조금 등	3,000	5,000	2,000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3,000	5,000	2,000	○복합찬기지원 (도비중액)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5,632	55,632	-	
710 보전수입 등	55,632	55,632	-	
714 예치금회수	55,632	55,632	-	
714-01 예치금 회수	55,632	55,632	-	

③ 지출 변경계획(안)

(단위:천 원)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민원봉사실	70,919	72,919	2,000
식품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	3,000	5,000	2,000
식품진흥기금 운영(식품진흥기금)	3,000	5,000	2,000
음식문화개선	3,000	5,000	2,000
201 일반운영비	3,000	5,000	2,000
01 사무관리비	3,000	5,000	2,000
○우수업소(모범음식점 등)지원 - 복합찬기 구입 50,000×60개소	3,000	5,000	2,000
재무활동(민원봉사실)	67,919	67,919	-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67,919	67,919	-
식품진흥기금 적립	67,919	67,919	-
602 예치금	67,919	67,919	-
01 예치금	67,919	67,919	-
○식품진흥기금 예치	67,919	67,919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7-106
----------	----------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거창시장 복층주차장 신축

1. 제안이유

- 시장 주차 수요대비 주차면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과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거창 시장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추진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1.19.: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신청(중소기업청)
- 2017.3.17: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사업 선정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거창시장 주차장 지내
- 사업기간: 2017.9. ~ 2018.6.
- 부지면적: 3,290㎡(토지소유자: 거창군)
- 사 업 량: 3,750㎡(3층 4단, 자주식 철골 주차장)
- 사 업 비: 2,930백만원(국비 1,758 군비 1,172)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 재 지	지목	사업량				
신축	건물	거창읍 중앙리 154번지	대지	3,750㎡ (주차면 190면)	2,930,000	2018	거창시장 주차장 복층화	거창 군수

※ 기준가격은 사업비로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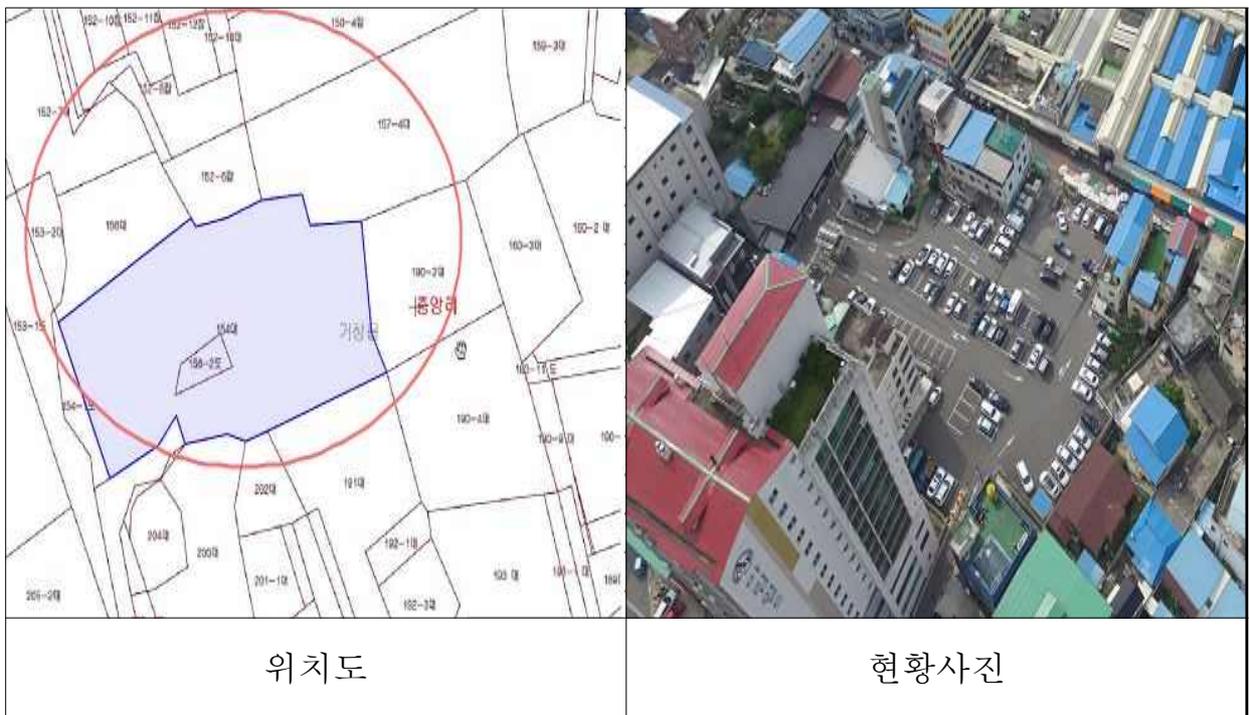
라. 향후계획

- 실시설계 용역: 2017.9.
- 착공: 2017.12.
- 준공 및 건물등기: 2018.6.
- ※ 현재 주차면수 90면 ⇒ 사업 후 190면 확보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읍 중앙리 154 외 1필지)



②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기부채납

1. 제안이유

- 골프참여 인구의 대중화 및 국민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 지역주민 고용창출, 소득 및 세수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위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하여 조성 완료된 골프장 시설의 기부채납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08.12.2.: 골프장조성협약 체결(거창군 ⇔ 체육진흥공단)
- 2012.9. ~ 2016.6.: 골프장 조성공사(체육진흥공단)
- 2017.7.20.: 기부채납 승인 요청(체육진흥공단 ⇒ 거창군)

나. 기부채납 개요

- 기부자
 - 대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권한대행 김성호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 근 거: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제5조(운영권보장 및 기부채납)
- 기부재산
 - 기부재산가격(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고
총 액	19,943,363,854	
공 단	13,606,605,022	기부채납
거창군	6,337,058,832	진입도로 등

○ 기부채납 재산 현황

구 분	내 용
재산의 명칭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대 지 위 치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지 역	자연녹지지역
대 지 면 적	571,765.4㎡(172,958평)
기부채납재산	건축물 : 클럽하우스, 관리동, 경비실, 카트창고, 야외화장실, 라이트시설 골프코스 : 그린, 티, 페어웨이, 벙커, 러프, 연습그린

다. 기부재산 세부내역

구 분	면적(㎡)	규 모	
합 계	571,765.4		
운 시 동 설	골프코스	129,083 그린(7,464) 티(2,252) 페어웨이(68,437) 러프(48,476), 벙커(1,802), 연습그린(652)	
건 축 시 설	클럽하우스	3,140	락커, 샤워실, 사무실, 레스토랑 등
	관리동	2,410	장비창고, 사무실, 락카/샤워실, 숙직실
	카트고	1,400	승용식 전동카트 보관 창고
	경비실	7	안내실 겸용(클럽하우스 앞)
	야외화장실	(6.24)	2번~5번홀 사이
원형보전녹지	387,283.4		
부대 시 설	진입도로	3,307	B(폭)= 10m / L(길이)= 334m
	관리도로	848	B(폭)= 4m / L(길이)= 217m
	카트로	14,144	B(폭)= 2.7m / L(길이)= 4,844m
	주차장	5,591	174대(장애인 9면 포함)
	저류지	21,130	11개소
	물탱크	914	1개소
	묘포장	2,508	1개소
	가스저장고		1개소
	야간조명		15개소
	오수처리장		1개소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③ 균유임야 매각

1. 제안이유

- 행정적 보존 필요성이 적은 균유임야의 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공유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허가 축사(양계장) 양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와 상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분개요

- 위 치: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158-1
- 면 적: 3,306㎡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필지			992
매각	토지	북상면 갈계리 산158-1	임야	3,306	992

※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당 300원)

나. 재산 대부현황

- 주 소: 거창군 북상면 송계로 941-20
- 성 명: 서대수
- 대부용도: 기타용(양계장)
- 대부면적: 3,300㎡
- 대부계약: 2012. 1. 1. ~

다. 추진경위

- 1980년대 후반 ~ : 양계업 시작.
- 2012.1.~4.: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및 최초 대부계약 체결.
 ※ 변상금부과: 2007.1.1~2011.12.31.(37,730원)/2017년 대부료: 약45,000원(연간)

- 2017.5.: 무허가 축사 양성화정책에 따라 임대 토지 불하 희망
- 2017.6.~7.: 산158번지에서 산158-1번지 분할 완료
- 2018.3.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
- ※ 양성화 불가 시 사용중지·폐쇄명령으로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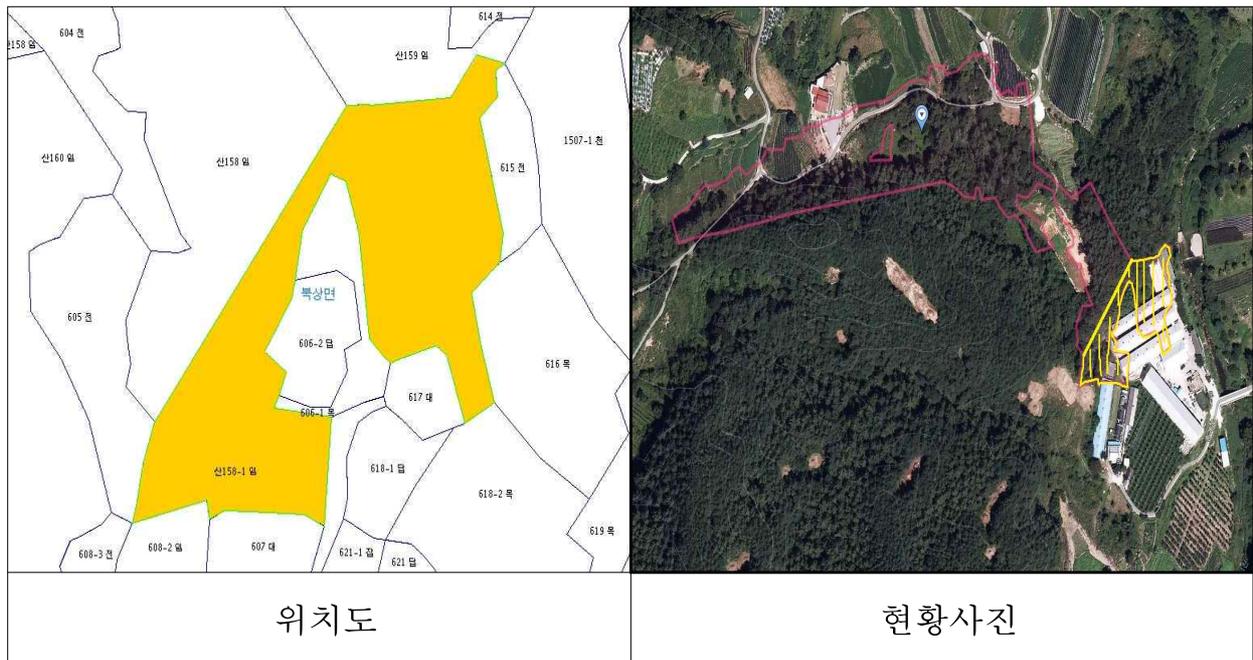
라. 향후계획

- 2017. 11월 중: 토지매각(일반경쟁입찰)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 위치도 및 현황사진(북상면 갈계리 산158-1)



4] 거창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1. 제안이유

- 거창 실내체육관은 준공 후 24년 지난 건축물로써 시설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등급 'C등급'으로 종합적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천장재 석면 검출로 중장기적 해체 및 제거가 필요함에 따라 개보수를 통해 내구연한을 증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1.26.: 문체부 공모계획 안내(경남도→거창군)
- 2017.2.21.: 기본설계 및 공모신청(거창군→경남도→문체부)
- 2017.4.5.: 공모 선정(국민체육진흥기금 600백만원)
- 2017.5.26.: 제1차 기금 교부(323백만원)
- 2017.6.12.: 인조잔디, 우레탄 교체 기금 교부(277백만원) 계획 안내
- 2017.7.4.: 제2차 기금 교부 신청
- 2017.8월 이후: 제2차 기금 교부 예정(277백만원)

나. 취득개요

- 위 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거창실내체육관)
- 규 모: 건축면적(1,821.7㎡) / 연면적(2,949.1㎡)
- 사업기간: 2017. 10. ~ 2018. 2. (5개월)
- 사 업 비: 1,200백만원(기금 600백만원, 군비 600백만원)
- 주요내용
 - 실내바닥 철거·교체, 내외부 보수·보강, 석면 철거·해체, 전열
 - 전등설비, 정보통신, 소방, 피난·경보설비, 냉난방 공사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리모델링
지목	소재지	면적		
토지 (체육용지)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	64,964	974,460	-
건물 (R/C조)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160	2,949.1	961,406.6	1,200,000

라. 향후 추진계획

- 2017. 8. ~ 9.: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 2017. 9.: 계약 및 공사 발주
- 2017. 9.~18. 2.: 공사 및 준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현황사진



수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건립

1. 제안이유

-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치매 어르신 관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보호 및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 필요함.
- 이에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건립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6.12.: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계획 수립
- 2017.6.21.: 적합부지 검토 및 소유자 면담
- 2017.7.28.: 관련부서(도시건축과) 검토
 - 1개소 2필지 적합 의견(김천리 237-9, 237-16)

재 산 의 표 시			소유자	비고
위치	지목	면적		
거창읍 김천리 237-16	잡종지	606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사유지	군유지 인접부지

나. 취득 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번지
- 사업기간: 2017.8. ~ 2018.3.
- 부지면적: 861㎡(군소유: 530㎡, 개인소유: 331㎡)

○ 사업비: 1,191백만원(국·도비675, 군비516)

(단위:백만원)

구분	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계	1,191	600	75	516	
시설비	991	600	75	316	
부지비	200			200	

※ 2018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1㎡당 1,870천원) ⇒ 건물면적 530㎡

- 주요기능: 노인요양등급미등급자(초기 경증 치매어르신)의 주간(낮)보호시설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욕구과약,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상담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관리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천원)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토지	거창읍 김천리 237-9	대	331	104,265	2017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부지	매입
건물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대	530	991,000	2018	거창군 치매안심센터건립	신축

※ 기준가격: 토지(2017년도 공시지가)/ 건물신축(건축 및 시설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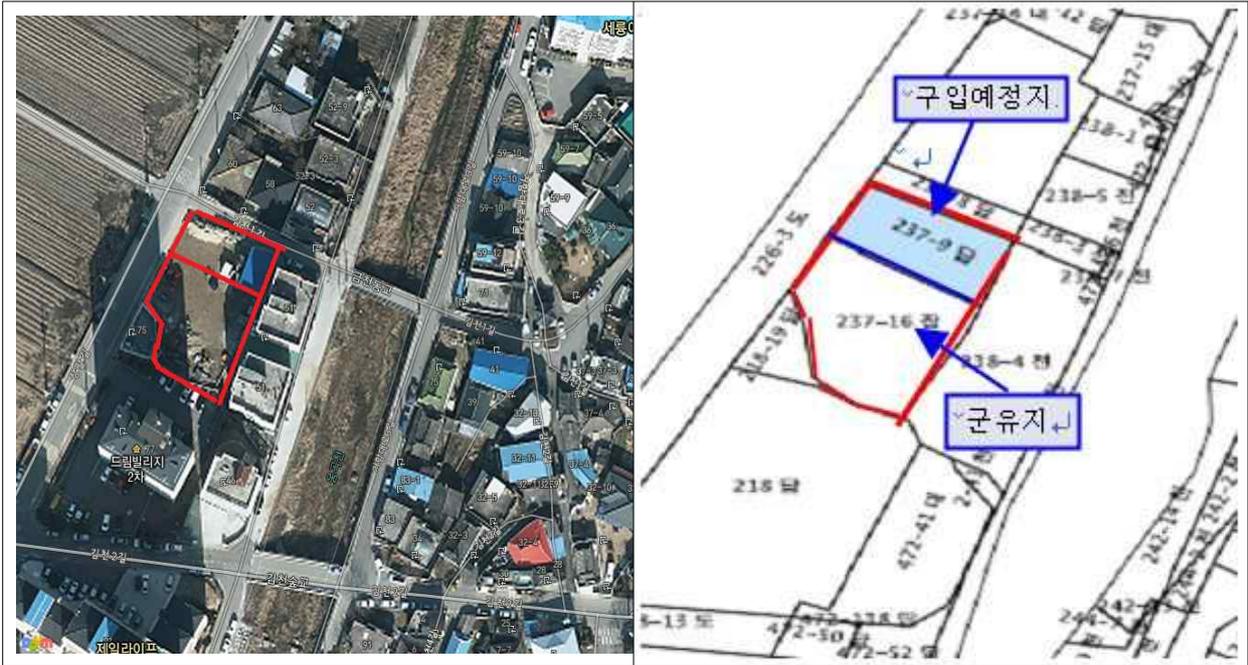
라. 향후계획

- 2017. 9.: 감정평가 및 부지 매입
- 2017. 10.: 설계용역
- 2017. 11.: 착공
- 2018. 6.: 준공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37-9, 237-16)



숙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및 증축

1. 제안이유

-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병동을 확충하여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집중치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경과

- 2017.7.2.: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기능보강 수요조사(경남도→거창군)
- 2017.8.1.: 치매안심병동 수요조사보고(거창군→경남도)

나. 취득개요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 사업기간: 2017.9. ~ 2018.3.
- 규 모: 100병상 부지4,283㎡(연면적2,568㎡)
- 사 업 비: 1,200백만원(국비960, 군비240)
- 주요내용
 - 2층 전체(50병상) 치매전문병실로 리모델링
 - 4층 치매집중 치료실 및 프로그램실 증축

다. 재산취득 내용

(단위: ㎡,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취득가액	비고
	소 재 지	장 소	면적등		
증축등	거창읍 운정3길180	2층(9실/50병상)	754.2	350,000	리모델링
		4층(증축/프로그램실)	198.0	600,000	증 축
		2층~4층	장비및프로그램	250,000	9종 등 구입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현황

(단위: m², 천원)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준공 일자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부지면적	규 모			
대지	거창읍 운정3길180	4,283	-	'05.12.28.	515,244	거창군수
건물	거창읍 운정3길180	2,568	지하 1층 지상 4층	'05.12.28.	1,514,515	거창군수

라. 향후계획

- 2017.9.: 추경(군비) 편성 및 행정절차
- 2017.10.: 설계 실시
- 2017.11.: 계약 및 공사발주
- 2017.12. ~ 2018.3.: 공사 및 준공
- ※ 경상남도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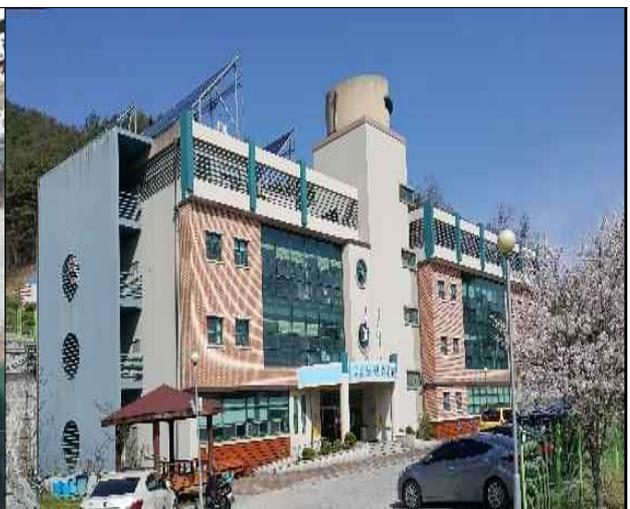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거창읍 운정3길 180)



위치도



현황사진

관 계 법 령(요약)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재산의 사용기간에 그 기부재산을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

(轉貸借) 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⑥ 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는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행정재산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행정재산으로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한 용도의 변경·폐지
 5. 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및 무상대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회칙)안

의안
번호 2017-107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지역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 문: 관광산업과 관광문화에 관한 회원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유지
나. 총 칙: 제1조~제4조

1) 명 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2) 목 적: 서부경남지역의 관광사업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등

3) 사 업: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 회원 및 조직: 제5조~제10조

1) 회 원

가) 서부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1개 시군의 관광업무 담당 부서장

(1) 시: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

(2) 군: 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나) 공공기관 등

(1) 당연회원: 한국관광공사 경남권 관할지사장

(2) 추가할 수 있는 회원: 경남도청, 관광학계, 관광업계 대표 인사

2) 회 의

가) 구 분: 정기총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정기총회는 1/4분기 정기회의)

나) 의 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

3) 재 정

가) 수 입: 회원 시군별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

나) 회 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운용기준 준용

다) 예산결산

(1) 예 산: 매년 당해 연도 사업계획과 같이 1/4분기 정기회의 의결

(2) 결 산: 다음 연도 1/4분기 정기회의 승인 의결

3. 규약안: 붙임

4.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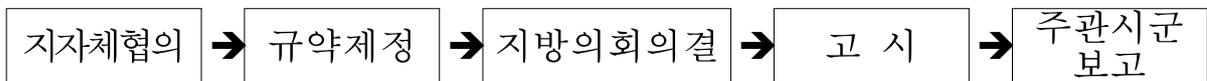
가. 관련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 2)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국민권익위 2016. 10. 31.)

나. 행정협의회 정의 및 설립 절차

- 1) 행정협의회의 정의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체

2) 설립절차



다. 기타사항

- 1) 임의협의체에서 행정협의체로 적법 구성 및 운영
- 2) 시군별 연간 부담금 규모: 10,000천 원 정도

붙 임: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1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경남권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시·군에 둔다.

제4조(회원) 협의회의 회원은 경상남도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의 관광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실·과를 말한다)의 장으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협의회의 임원으로 회장 및 부회장, 감사 각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회장 시·군의 공무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매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제6조(임원의 역할)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협의회의 사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사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④ 간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과 집행, 결산 및 재정운용, 회의서류 및 회의록의 작성,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기록물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3.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 시행
4. 국내외 합동 관광설명회 개최
5. 국내외 관광박람회 공동 참가
6. 공동 시티투어사업
7.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상호 지원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자 회의를 따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결) 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 ① 협의회 회계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회원 시군의 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은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

④ 협의회 세입·세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협의회 세입세출예산안은 그 전년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세입세출결산안은 그 다음 연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② 회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하반기 정기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상반기 정기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감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회회의 설립 목적 실현과 사업 추진 내실화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위원은 회원의 추천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제13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은 회원 2분의1 이상의 발의로 의제가 되고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4조(합의) 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08
----------	----------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내용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이 만료됨.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나. 위 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다. 주요시설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라. 위탁대상 사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242,184천원(연간 80,728천원)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관리비)

※ 현재 관리현황

- 위탁기관: (사)향토민속보존협의회
- 위탁기간: 2014.12.19. ~ 2017.12.1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나. 그간추진현황

- 전수관 민간위탁 기본계획 수립: 2017. 7월

다. 향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10월초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12월초

라. 위탁운영 계획: 따로 붙임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관리 계획안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의 관리위탁기간의 만료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1 전수관 운영 근거

-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문화재보호법 제84조

2 기본현황

- 시 설 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 전수관
- 위 치: 거창읍 수남로 2193-40
- 인력현황

직위	이사장	사무국장	직원
인원/명	1명	1명	1명
직무	대표 (상근)	총괄업무, 기획업무	실무

- 시설현황

구 분	전수회관		체험관1	체험관2	체험관3
	지하 1	지상 1			
951.6㎡	141.6㎡	679.5㎡	57.6㎡	40.5㎡	32.4㎡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위·수탁협약일로부터 2020. 12. 19. (3년간)
- 위탁대상 업무
 -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무형문화재 교육 회원 관리 및 체험활동 보조
 - 전수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 수탁기관 모집 : 수의계약
 - ※ 문화재보호법 84조: 문화재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위탁조건
 -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관을 적극 활용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해 홍보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전문성 있는 단체
 - 전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위탁 비용으로 사용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는 분기별로 하며 관리물품 현황은 매년 보고
- 선정기준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공익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 검토하여 선정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10월초
- 위·수탁계약 체결: 2017. 12월초

5 기대효과

-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
- 무형문화재 홍보 및 효율적 관리운영 기대

관 계 법 령

【거창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4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해당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관리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전수교육관의 운영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군수는 전수교육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문화재보호법】

제84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또는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09
----------	----------

제 출 일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 어르신들의 치매 및 노인성질환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거창군립 노인요양병원의 계약기간이 도래되어 재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나. 시설현황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운정3길 180
- 규 모: 부지면적 4,283㎡(건축 연면적 2,568) 지하1층, 지상4층
- 병상규모: 130병상
- 세부시설현황
 - 지하1층: 기계실, 보일러실, 발전실
 - 지상1층: 외래진료실, 물리치료실, 약제실, 행정실, 임상병리실
 - 지상2, 3층: 간호사실, 입원병실
 - 지상4층: 식당
- 의료장비 및 물품: 325종 / 2,872개

다. 그간 운영 상황

- 수탁기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2007. 10. 23. ~ 2017. 10. 22.(10년간)

○ 진료실적 현황(최근 5년간)

구분(년도)	합 계	외래환자	입원환자		비고
			전체입원환자수	거창군거주환자수	
계	10,298	9,169	1,129	962	
2012년	1,196	959	237	195	
2013년	2,417	2,179	238	206	
2014년	3,753	3,559	194	173	
2015년	2,094	1,877	217	189	
2016년	838	595	243	199	

○ 인증의료기관 획득(2015년도)

- 인증기간: 2015. 8. 9. ~ 2019. 8. 5.(4년간)
- 평가기관: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인증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사, 간호인력 가산등급)

- 최근 5년간(2012년 ~ 2016년) 1등급
- 산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최근 5년간 의료기관 행정처분 해당사항 없음

라. 재위탁 추진 상황

- 수탁기관(서경병원) 재수탁신청서 제출: 2017. 6. 14.
- 재위탁 자체 평가 실시: 2017. 6. 23.
- 재위탁 심의위원회개최: 2017. 7. 6.
- ※ 심의위원: 7명(재 위탁 가결)

마. 향후 추진계획

- 재수탁기관: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
- 위탁기간: 2017. 10. 23. ~ 2022. 10. 22.
- 위탁내용
 - 치매환자의 진료 및 입원 관리
 - 거창군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 위·수탁 운영계약서 공증 및 계약체결: 2017. 9월

3. 참고사항

가. 경남지역 공립요양병원 위탁 현황

(2016. 12월말)

병원명 (수탁운영자)	규모 (병상)	입원 환자	직원 (의사)	위탁기간 (계약횟수)	비고
도립사천 노인전문병원	228	193	97 (6)	2013.10.11 ~ 2018.10.10 (5년, 1회)	2018년
도립통영 노인전문병원	280	250	124 (8)	2016. 6.11 ~ 2019. 6.10 (3년, 4회)	2016년 재위탁
도립김해 노인전문병원	199	172	82 (5)	2017. 7.12 ~ 2020. 7.11 (3년, 5회)	2017년 재위탁
도립양산 노인전문병원	199	194	75 (6)	2017. 7.12 ~ 2020. 7.11 (3년, 5회)	2017년 재위탁
시립창원요양병원	175	168	64 (5)	2013. 1. 1 ~ 2017.12.31 (4년, 2회)	2017년말
시립마산요양병원	295	295	128 (10)	2008 10 30 ~ 2018 10.29 (10년, 1회)	2018년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	128	126	67 (5)	2016. 5. 1 ~ 2021. 4. 30 (5년, 1회)	2016년 수탁자계약 포기로 공고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95	95	46 (2)	2008. 4.22 ~ 2018. 4.21 (10년, 1회)	2018년

나. 재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오랜 기간 본 사업을 운영한 결과 축적된 경험과 환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유리한 조건을 구비함
-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인 서경병원과 연계로 빠른 조치 가능

다.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운영조례」 제4조

관 계 법 령(요약)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보건소)

(제정) 2004.02.10 조례 제1702호
(일부개정) 2005.10.05 조례 제176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2.11.07 조례 제2113호

제 4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노인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계약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2012.11.07.)

1. 의료법인(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종합병원을 2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
 3. 의사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10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②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노인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3천만원 이하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0. 5)
-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 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5.10. 5)(개정 2012.11.07.)
- ④ 노인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7.,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2.4.,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6.8., 2014.1.7., 2015.1.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2.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7-110
----------	----------

제출일자 : 2017. 8.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요구이유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의거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전문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나.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139-7
- 다. 시설현황

처리방법	시설용량	처리공정	비고
열분해가스화방식 (24시간)	30톤/일(1,250kg/hr)	1차연소실(열분해실)-2차연소 실-폐열보일러-반건식세정실- 여과집진시설-굴뚝	

- 라. 위탁대상 사무
 -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운영관리
- 마.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
- 바. 위탁업체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평가에 의한 적격한 업체선정
- 사. 소요예산: 1,547백만원 정도 / 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나. 현재 운영사항

- 시설명: 거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 시설용량: 30톤/일(1,250kg/hr)
- 처리방법: 고온열분해방식(24시간가동)
- 운영업체: 환경관리주식회사 등3개 업체
- 위탁운영기간: 2014. 01 ~ 2017. 12
- ※ 금년12월 기간만료로 2018년부터 거창군 환경과(자원순환담당)로 이관관리

다. 향후계획

- 2017. 09.: 시설위탁 의회동의
- 2017. 09.: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및 시행계획공고
- 2017. 10.: 참여업체접수 및 평가
- 2017. 10.: 가액입찰참가자결정 통보 및 입찰실시
- 2017. 11.: 업체선정 및 인수인계절차
- 2018. 01.: 운영

관 계 법 령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한다.
 - 1.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장 추천 군의원
 -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 1. 재산의 표시, 사용, 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6.21.>

-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6.21.>
-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7.12.>
-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8.4., 2013.6.21., 2016.7.12.>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5.1.20.>
-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2.5.23, 2013.3.23, 2014.11.19, 2016.9.13.>

② 삭제 <2012.5.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⑤ 삭제 <2016.9.1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4.11.19., 2016.9.13., 2017.7.26.>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9.15.>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⑫ 삭제 <2016.9.13.>

⑬ 삭제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시행 2016. 1. 20.][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 1.19, 일부개정]